

**안전지대 없는
『물지마 범죄』 !!**

2012년 10월 9일

**행정안전위
국회의원 박 남 춘**

목 차

1.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 『묻지마 범죄』	1
2. 『묻지마 범죄』 정의 및 특성	3
2.1 『묻지마 범죄』 란?	3
2.2 『묻지마 범죄』의 특징	3
2.3 『묻지마 범죄』의 세분화	4
3. 『묻지마 범죄』는 왜 발생하는가?	6
3.1 사회적 원인	6
3.2 개인적인 원인론	8
4. 『묻지마 범죄』의 실제사례	10
4.1 국내 사례	10
4.2 해외 사례	13
5. 주요국의 『묻지마 범죄』 대책	16
5.1 미국	16
5.2 영국	17
6. 『묻지마 범죄』의 대책	19
6.1 지금까지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치안력 강화방안	19
6.2 2012. 9.3일 발표 범죄예방 대책	22

7. 경찰청의 『묻지마 범죄』 대책의 문제점	25
7.1 수사 기법의 문제 - 프로파일링 기법의 문제점	27
7.1.1 프로파일링 현황	27
7.1.2 프로파일링 운영의 문제점	29
7.2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활용 부족	33
7.3 법적 미비점의 문제점	36
8. 경찰청의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	39
8.1 수사 시 개선 방안 - 프로파일러	39
8.2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42
8.3 입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43
9. 범죄 예방과 묻지마 범죄	45
〈참고자료〉	47

1.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 『묻지마 범죄』

- 사회가 복잡하게 변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 유형도 달라지고 있음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유형으로는,
 - 첫째,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업과 가계 빚 증가로 인한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둘째,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통신·게임사기, 불법 음란·도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이버범죄와 바이러스 유포 및 해킹 등의 사이버테러가 급증하고 있음
 - 셋째,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성폭력 범죄는 신고율이 3%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범죄는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도 영미 등 선진국에서만 발생하는 줄로만 알았던 '비전형적인 이상범죄'인 무동기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요즘 뉴스와 신문을 자주 장식하는 「묻지마 범죄」라는 말은 사회 통념상 쓰는 단어가 되었음
- 특히, 『묻지마 범죄』는 특정한 범죄유형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살인, 방화, 강간, 상해, 손괴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
- 『묻지마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항시적으로 존재했었고, 2007년 이후 5대 범죄에 대한 우발적 동기로 인한 범죄현황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묻지마 범죄』가 증가했음

5대범죄 묻지마(우발적) 범죄 범죄현황

자료: 경찰청(단위: 명)

구 분	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2007년	283,541	493	1,018	4,918	22,794	254,318
2008년	302,983	638	1,360	5,771	27,783	267,431
2009년	315,205	824	2,280	6,108	41,186	264,807
2010년	252,895	627	1,237	6,147	34,070	210,814
2011년	219,049	510	919	5,711	30,309	181,600
2012.8월	142,485	282	478	3,827	19,285	118,613

- 특히 『묻지마 범죄』는 동기가 없는 범죄를 의미하지만, 수많은 사건들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에 의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서, 사회에 대한 불만, 경제상황의 악화, 가정불화, 학교에서의 폭력 등 분명한 동기가 존재함
- 따라서 『묻지마 범죄』는 범죄의 발생형태만 다를 뿐, 현재의 많은 범죄들과 그 원인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를 중심으로 치안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함

2. 『묻지마 범죄』 정의 및 특성

2.1 『묻지마 범죄』란?

- 『묻지마 범죄』는 범죄대상이 범죄 행위자와 아무런 특정의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통칭함
 - 『묻지마 범죄』는 특정한 범죄유형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살인, 방화, 강간, 상해, 손괴 등의 연쇄범의 형태로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묻지마 범죄』는 기존의 범죄와는 달리 범죄자의 ▲ **범죄동기와 목적이 불분명** ▲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인과관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 **가학적이거나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범죄현장에서 쉽게 범행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묻지마 범죄』는 일반적으로 동기가 없는 범죄를 의미하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에 의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서, 사회에 대한 불만, 경제상황의 악화, 가정불화, 학교에서의 폭력과 같은 내용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2.2 『묻지마 범죄』의 특징

□ 범죄의 특징

- 『묻지마 범죄』는 생존 욕구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된 사람들의 분노의 표출¹⁾임.
- 승자독식의 사회, 사회적 배제와 빈곤이 갈수록 공고화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구조적 벽에 가로막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할 것임

1)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 여성단체연합 주관 토론회, “2012 정책토크, 시민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2012.9.18일, “‘묻지마 범죄’라고 낙인찍지 말고 ‘절망 범죄’라고 표현하며 무엇이 그들을 절망시켰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좌절, 스트레스, 또는 사회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과 분노를 표출하는 범죄임

○ 또 다른 특징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전형적인 범죄로서 그 종류가 다양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띤

□ 범죄자의 특징

○ 사회에 대한 막연한 복수심으로 자신들이 과거에 받은 피해 상황에 대하여, 가해 당사자에 대한 복수심·분노와 함께 사회 전반 불특정 다수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게 됨

○ 자신에게 피해를 가한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인간의 사회적 본능에 의하여 주저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공격함으로써 그 불만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 묻지마 범죄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이지만 스스로 일탈적 윤리규범을 세우고 그것을 논리화시켜 마치 그것이 옳은 규범인 것처럼 스스로 믿게 되는 경우, 또는 정신적 문제로 인해 올바른 윤리의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적인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2.3 『묻지마 범죄』의 세분화

○ 『묻지마 범죄』는 범행동기의 유무 및 범행대상의 특정여부에 따라서 4가지 범죄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

범죄영역 구분2)

범행대상 \ 범행동기	있음	없음
특정인	①	②
불특정인	③	④

※ ②의 영역에 해당되는 특정범죄 유형은 없다고 보아야 함. 왜냐하면 범행동기 없이 피해자를 특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임

- 진정한 의미의 『묻지마 범죄』는 ④의 영역에 해당됨
- ①의 영역에는 수사기관에 포착되는 전통적인 범죄영역(고의범 또는 과실범), 보복범죄, 또는 우발범죄 등이 포함될 것임
 -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범죄는 범행당시 동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발범죄는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범죄 실행의 기회가 우연히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와 구별됨
- ③의 영역에는 테러, 증오범죄, 연쇄적 강력범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테러행위는 비록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직접적인 폭력 행사이지만 특정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와 구별됨
 - 증오범죄는 특정 종교, 인종, 국적, 피부색, 성적 취향 등에 대하여 증오 또는 혐오감을 가지고, 관련 집단의 구성원에게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함
 - 특정집단에 대한 증오 또는 혐오감이라는 동기에 의하여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공격한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와 구별됨
 - 연쇄적 강력범죄는 요즘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묻지마 범죄』에 포함되어 불리워지고 있음
 - 그러나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인 사이코패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범죄자 중심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 범행동기가 존재함

2) 입법조사처 박남춘 의원실 제출자료

3. 『묻지마 범죄』는 왜 발생하는가?

3.1 사회적 원인

□ 계층의 경제적 양극화

- 계층 양극화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양극화를 의미하며, 폭발성이 강한 사회혼란의 원인임
- 경제적인 부의 균형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고 이들이 점차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과정에서 불특정인 또는 본인이 아는 지인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를 자행할 수 있음
- 『묻지마 범죄』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동성과 우발성은 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출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충남이나 필리핀과 같이 극단적인 수준으로 양극화가 일어난 국가에서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함
- 우리나라의 경우, 93년 7월부터 94년 9월 사이 충남 대전, 경기 성남, 전남 영광 등지에서 조직원 및 납치부부, 부녀자 등 5명을 살해한 지존파 사건이 대표적인 것임
 - ※ 피의자들이 남긴 노트에는 ‘가진 자들은 시운을 잘 타고나 평생 힘 안들이고 소리쳐가며 살아가는 반면 가진 것 없는 한평생 소와 말처럼 일만 하고 죽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생활 한 번 못해보고 일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공정한 세상’ 이라며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들이 적혀있었음³⁾

3)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의 살인범죄 실태와 수사(제4권, 2004년) p.1658

□ 쾌락주의

- 윤리적 도덕적 삶을 포기하고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현상이 널리 팽배하면서 목적과 가치관을 상실한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
 - 이러한 몰가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행동 방향을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폭력적 문화의 팽배

- 폭력적인 문화는 범죄현상을 심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과 역할을 함
 - 특히 미디어와 범죄의 관련성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도 사회적 학습에 의한 폭력성의 증대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임

- TV나 인터넷, 영화, 게임과 같은 소위 4대 매체에서 폭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폭력의 일상화, 자아와의 동일화가 이루어지며, 동기가 없는 범죄를 만들어 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됨

3.2 개인적인 원인론

□ 스트레스 원인론

-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과도한 공격성은 원시적 파괴성을 나타내는데 어린 시절 오랫동안 고통스러웠던 질병과 신체적·성적 폭력 등은 심한 파괴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묻지마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분석해 보면 과도한 외상적 경험, 신체적·성적 학대, 사랑과 관심을 주는 부모의 부재 등이 이들의 인격적 성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옴

□ 무연관성

- 묻지마 범죄의 동기 중 낯선 사람에 대한 범죄는 피해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가해자의 공격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 일반적인 공격성에 의한 범죄보다 더 위험함
- 왜냐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범행동기를 만들어 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본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였거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의미있는 타인'으로 간주하며, 잠재적인 자신만의 공격 대상을 가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일반인들은 자신이 언제라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성·증가할 수 있음

□ 성적충동 원인론

- FBI 행동과학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범죄심리학적 조사결과에 의하면 연쇄살인의 직접적인 동기는 SEX가 대부분임

- 연쇄살인범들은 SEX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한 '힘의 과시', '손상당한 자존심의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살인행위에 중독되어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임⁴⁾

4) 김상균,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09.7.22

4. 『묻지마 범죄』의 실제사례

- 『묻지마 범죄』의 대표적인 범죄유형으로는 살인, 방화, 성폭력, 상해, 손괴 등이 있으며, 또한 주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
- 국내와 해외의 『묻지마 범죄』 사례와 범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4.1 국내 사례

- 연쇄 살인, 방화, 연쇄 성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묻지마 범죄』 유형이 있음

□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

- 김대한 (당시 56세)은 2001년 4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 상하반신 장애가 오게 되어, 같은 해 11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임
-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있던 김대한은 지하철이 중앙로역으로 진입하자 페트병 2개에 나눠 담은 휘발유 2리터에 불을 붙였으며, 이로 인하여 전동차 12량이 모두 불에 타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한 사건임
- 김대한의 방화이유는 심한 우울증 후 정신질환이 심해진데 따른 판단력 상실로 알려짐

□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

-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은 정상진(1978년 2월 27일생, 경상남도 합천, 당시 30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의 D고시원에 화재를 일으킨 뒤, 화재연기를 피해 복도로 뛰어나온 피해자를 미리 준비

하고 있던 칼로 무차별적으로 찢러 살해 또는 중상을 입힌 살인 사건임

- 화재로 고시원의 세 층이 일부 전소했으며, 칼에 무차별적으로 찢린 피해자들은 사망자 6명, 중상 4명, 경상 3명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진은 사형이 선고받았음

□ 정두영 사건

- 정두영은 1968년 부산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2세 때 아버지가 숨지고 어머니가 재혼하자 삼촌집에 맡겨졌으며,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냄
- 정두영은 1988년 18세 때 불심검문 중인 방범대원 김모씨를 살해해 11년을 복역한 이후,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16번의 강도를 범하고, 그 과정에서 9명 살해, 9명 중상을 입혔음
- 정두영은 늘 자신의 왜소한 외모 탓에 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둔기를 이용해서 살해했다는 점이 특징임

□ 유영철 사건

- 유영철은 전북 고창에서 막노동으로 어렵게 살던 부모 밑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초중고 시절은 서울에서 지냄
- 유영철이 14세에 부친이 사고로 사망한 후 홀어머니 밑에서 형제들과 살아오다가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였으나 좌절되고, 공

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지만 학교부적응으로 자퇴하였음

- 유영철은 평소 편협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격분하는 성격의 소유자로서, 이혼 후에는 말을 하지 않고 대 인기피현상을 보였음
- 2003년 9월 11일 출소한 유영철은 9월 14일 서울 강남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이후, 서울 강남구, 종로구 일대에서 사람을 살해하는 등 2004년 7월 18일 체포될 때까지 20명을 살해하였음
- 유영철 사건의 범죄특성은 주로 부자인 노인 및 여성을 대상으로 둔기를 사용하여 살해했다는 점임

□ 기타 연쇄살인사건

지춘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노인 6명 살해, 4명 중상해 ▶ 범행장소: 청송 및 안동 일대 외딴 집 ▶ 도구: 이불장롱 등 가재도구, 불, LP가스 ▶ 성장과정: 불우 ▶ 전과: 강간치상 1범 ▶ 동기: 돈세상에 복수, 가진 자 처벌
김기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5명 ▶ 범행장소: 전남경기충남 등 도로 ▶ 도구: 총기, 칼, 차량, 감금시설, 소각로 ▶ 성장과정: 부친 음주폭력외도, 모친 자살 ▶ 전과: 성폭력 등 13범 ▶ 동기: 평생 처음 사귀 여성으로부터 거절당함, 자살충동, 사회에 복수, 여성혐오
윤보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2명 살해, 3명 살인미수, 6명 강간 ▶ 범행장소: 서울경기일대 길거리 ▶ 도구: 훔친 택시, 칼, 끈 ▶ 성장과정: 부친 음주외도폭력 등으로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 거짓말, 폭력성 ▶ 전과: 고교 2학년 특수절도로 소년원 이후 11범 ▶ 동기: 출소 및 이혼 후 좌절, 사회불만, 살인충동
정남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사회불만, 살인충동 ▶ 피해자: 봉천동 세자매 및 이문동 살인 등 8명 살해, 14명 중상해 ▶ 범행장소: 서울 서남부 지역 ▶ 도구: 둔기, 칼

4.2 해외 사례

- 최근 몇 년간 묻지마 범죄는 외국의 경우도 자주 나타남.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 사건이나 일본의 아키하바라 사건, 노르웨이 테러 사건 등은 묻지마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임⁵⁾

□ 미국 - 버지니아 공대 사건

-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 버지니아 주 블랙스버그에 위치한 버지니아 공대 (약칭 Virginia Tech) 캠퍼스에서 2007년 4월 벌어진 총기에 의한 살인 사건임
- 교내의 웨스트 앰블러 존스톤 기숙사과 노리스 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이 사건으로 32명이 총상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29명이 부상을 입었음
- 사건의 범인은 재미 한국인 조승희로, 그는 범행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였으며 8세(만 7세) 때 미국에 이민을 간 이민 1.5세대였음. 그는 사건 당시 버지니아 공대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4학년생으로 재적 중이었으며 사건 직후 난사 하던 총기로 자신의 얼굴을 쏘 자살하였음

□ 아키하바라 사건

- 2008년 6월 8일, 도쿄 도 지요다 구 소토칸다 지역의 교차로에서 2톤 트럭 차량 한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5명의 보행자를 들이받았음
-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용의자는 차에서 내려 다친 보행자에게로 접

5) 네이버 위키 백과 참고

근하고 있던 행인과 경찰관 14명을 소지하고 있던 등산 나이프로 연달아 찔렀고, 사건 발생 5분 후, 경찰관이 용의자를 추적해 경봉으로 대응한 뒤, 마지막에는 권총으로 남자를 제압하였음

- 대학생과 회사원 등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무차별적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어 일본 역대 최악의 참사라고 불릴 만큼, 일본 사회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음
-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가토 도모히로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생활에 지쳤다. 세상이 싫어졌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키하바라에 왔다. 누구라도 좋았다”며 범행동기를 진술하였음
-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 무선인터넷 게시판에 약 1000회 정도 비정규직 관련 글이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으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도 끊임없이 올렸음

□ 노르웨이 - 2011년 노르웨이 테러

- 2011년 노르웨이 테러는 노르웨이 노동당 정부와 노동당 청년 캠프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 공격임
- 7월 22일 오슬로의 행정부 건물과 총리 집무실 외곽, 기타 정부 건물에서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으며, 이 폭발로 7명이 사망했고 두 번째 공격은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난 2시간여 후 우퇴위아 섬의 노동당 청소년캠프 행사장에서 발생하였고, 범인은 경찰로 위장한 뒤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총을 쏘았고 90여명 사망함
- 총기 난사 사건 직후, 노르웨이 경찰에 의해 32세의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용의자로 체포되었음. 노르웨이 경찰 당국은 용의자

가 극우주의자이자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발표하였음. 브레이비크는 인터넷 상에서 반 다문화주의 활동을 했던 인물로서, 대한민국과 일본, 중화민국을 다문화주의에 부정적인 국가로 언급하며, 해당 세 국가를 찬양하고 칭찬하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보도되었음



그림 1 노르웨이 테러 희생자 추모 물결

(AP=연합뉴스) 조화와 촛불, 노르웨이 국기가 23일(현지 시각)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거리에 놓여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총리집무실 등이 있는 정부청사를 노린 폭탄테러에 이어 집권 노동당 청소년캠프 행사장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90여명이 숨졌다.

- 베링브레이크비크가 쓴 것으로 보이는 성명에는 노르웨이 연쇄테러는 적어도 지난 2009년 가을부터 계획했고, 그는 일단 공격계획을 세웠으면 목표했던 만큼의 충격을 이끌어내기 위해 "불충분하게 죽이는 것 보다는 많이 죽이는게 낫다"며 "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목격된 가장 거대한 괴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적었음⁶⁾

6) <노르웨이 테러범 "다문화주의, 유럽 파괴">(종합), 연합뉴스, 2011.07.24

5. 주요국의 『묻지마 범죄』 대책

5.1 미국

□ 수사부문

-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연방수사국(FBI)에 행동과학부를 설치하여 무동기, 증오, 연쇄적 범죄에 대한 자료 수집, 프로파일링 연구를 실시함
- 1980년대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유사한 강력사건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동과학부 소속으로 전국강력범죄분석센터(NCVAC)를 설치하여 강력범죄분석프로그램(ViCAP)을 가동함
- 1987년에는 법무부에서 살인사건수사추적시스템(Homicide Investigation Tracking System : HITS)을 구축하여 미국 전역의 모든 사법기관 간에 살인, 성폭행, 미야사건 등 강력사건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1980년 뉴욕과 보스턴 경찰국은 편견에 의한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등 증오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증오범죄와 관련된 자료수집과 활용, 관리를 위해 1989년 증오범죄통계법(Hate Crime Statistics Act)을 제정하였음

□ 예방과 억제

- 미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과 자치단체간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법순찰을 중시하고 있으며, CCTV, 민간경비업체 등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관련 법제로는 1994년에 제정된 성범죄자의 신원, 경력, 주소를 지역사회에 알리도록 하는 메간법(Megan's Law)과 폭력범죄의 통제 및 단속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증오범죄 형량 선고 강화법(Hate Crime Sentencing Enhancement Act), 그리고 1997년에 제정되어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한 증오범죄 예방법(Hate Crimes Prevention Act) 등이 있음

5.2 영국

□ 수사

- 영국 경찰은 연쇄 강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특수수사팀, 광역수사팀에 의해 범죄현장 감식 및 조사,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전과자나 우범자들에 대한 수사 등을 진행해 해결하여 왔음
- 그러나 점차 연쇄살인, 성폭행, 방화 등 기존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범죄가 증가하자 범죄심리학자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는데, 1990년 이후에는 다수의 심리학자, 정신병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심리학자문단을 운영하였음
- 또한, 법의학적 증거나 용의자에 대한 감시가 범인 체포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범죄 자료검색을 단일 컴퓨터체제로 개편하는 홈즈(Home Office Large Major Enquiry System : HOLMES)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음

□ 예방과 억제

- 영국 정부에서는 2006년까지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별도의 예산 확보하여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또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이 도입되어, 경찰이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등을 인증하는 방범환경설계인증제도(Secured by Design Award Scheme)를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주요 강력 및 폭력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강화 및 가석방 제한, 전과자 등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외출제한 등으로 범죄 위험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1983년에는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을 제정하여 위험스럽지만 형을 선고하기에는 범죄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정신감정 등을 통해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판명된 피의자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 구금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6. 『묻지마 범죄』의 대책

6.1 지금까지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치안력 강화방안

- 경찰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대형사건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 각종 범죄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추진함
- 2004년 이후 5건의 「묻지마 범죄」 사건 이후 경찰이 추진한 치안 대책을 보면 수사지원센터 설립과 CCTV 확대, 인력보강, 성폭력전담수사관운영 등이 있었음

기존 「묻지마 범죄」 발생시 경찰 추진 치안정책

자료: 경찰청

연도	계기가 된 사건	경찰대책	추진현황
2004년	서울 부유층 연쇄 살해사건 (유영철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지원센터설립(과학수사지원센터 설립) - 2004년 12월 기존 과학수사과를 과학수사센터로 확대 개편
2009년 2월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강호순사건)	CCTV 등 방법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는 경찰서별 자치단체와 협의, 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 ※ '10년의 경우 방법용 CCTV 13,339대를 추가 설치(약 1,897억원, 대당 1,200만원)하여 총 35,107대를 설치 ◦ '12년 8.1현재 55,014대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범죄취약지 중심 지속적인 확대 추진중 ※ 국가예산으로 CCTV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해 '13년도 예산안에 요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미반영
		취약시간대 부녀자 안전귀가 및 검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시간대 부녀자 안전귀가를 위한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다세대·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2010년 3월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김길태 사건)	재개발·재건축 지역 치안환경 정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건축) 현장의 공·폐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색·CCTV보강 등 방법 활동 강화 지시 이후 현재까지 지속 실시 중

연도	계기가 된 사건	경찰대책	추진현황
2012년 4월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사건 (오원춘 사건)	112신고 대응체계 전면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센터 요원 재평가 통한 인적 쇄신 및 인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112종합상황실 인력(총2,154명) 재평가, 235명 교체 - 상황실장 전담요원 배치 및 4조 2교대 실시 위해 총598명 추가배치(기존 2,154명 → 최종 2,752명) ◦ 경찰교육원 특별 교육과정 개설 통한 전문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선발된 112센터 요원 등 총 931명 대상, 1회차(100명)당 2주씩 전문 교육 진행중('12. 5. 21~) ※ 6회차(600명) 교육 완료 ◦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제작 완료 ◦ 112접수·지령 시스템 개선 추진 중 ⇒ '12. 12월限 개선 완료 예정 ◦ '112·119 핫라인 3자 통화' 전국 확대 완료
2012년 8월	통영 여자초등생 살해사건	성범죄자 관리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 정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대상 정기적으로 등록정보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소관부처인 법무부·여가부에 변경사항 통보 ⇒ 소관부처에서 신상정보 등록·인터넷(성범죄자 알림e) 공개
	제주 올레길 40대 여행객 살해사건	성폭력 전담수사관· 원스톱지원센터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전담수사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관 지정·운영(총 1,243명 운영 중) ◦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병원에 상주, 피해자 조사 및 의료·상담 등 지원(전국 22개소에 설치·운영 중)

○ 경찰청은 2004년 과학수사센터 주관으로 ViCAT(Violent Crime Analysis Team)을 출범하고 전국 지방청 과학수사계에 범죄분석요원을 팀원으로 지정·운영하는 한편, 경찰청 범죄정보지원계에서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인 SCAS(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를 개발·활용하고 있음)

7) 권일용, 「무동기 범죄의 수사」, 『수사연구』 제24권 4호 통권270호, 2006.

- 또한 성폭력 등 우범자 관리 강화로, 실질적인 우범자 첩보수집활동 기반 마련, 재범방지 및 범죄 수사 자료 확보
 - 강력범죄 예방활동 적극 전개 등 가시적 치안활동으로 범죄분위기 조기 제압 및 국민 불안 해소 추진

-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대형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책을 제시하지만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임

6.2 2012. 9.3일 발표 범죄예방 대책

- 최근 강력범죄의 잇따른 발생으로 국민들의 치안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범죄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9.3일 발표)
- 첫째, 경찰청은 2012년 9월 3일부터 한 달간 방범비상령을 선포하고, 우범자 관리,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 흉기 소지 의심 인물에 대한 불심검문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음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둘째,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예산안에 경찰관·보호관찰 등 현장 치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 1,259명을 확충하고, 전자발찌 실효성 개선, 아동보호구역에 방범 CCTV 설치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를 반영하였다고 발표하였음⁹⁾

경찰청 요구 직제 현황 10)

부처명	요 구 제 출	주요내용	비고
경찰청	3.16,	[요구]기구:2차장,7과(대)/정원:3,037명 - 세종시 정부청사경비대 신설, 사회안전저해범죄 대책 관련 인력 보강	9.18 국무회의
	4.16	[결과]기구:1대,101과/정원:1,037명 -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신설 및 총리공관 경비(1대, 27명) - 성폭력 등 사회안전저해범죄 관련 치안력 강화(101과, 1,010명)	

8) 사이버 경찰청, 『보도자료』,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http://www.polic.e.go.kr/announce/newspdsView.do?idx=98862&cPage=3#btn_list>

9) 『뉴시스』, 「[2012예산⑩]안전-경찰 병력·CCTV확대」, 2012년 9월 25일자.

10)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인용

- 9월 18일 국무회의 결과, 성폭력 등 사회안전저해범죄 관련 치안력 강화로 101과 1,010명 증원 결정이 되었음.
- 셋째,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 정보공유, 전자발찌 위반 현장 공동 출동 등 반사회적 범죄 예방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음¹¹⁾

경찰, 방법비상령 선포...성폭력 예방부서 신설

‘아동포르노대책팀’도 운영...총력 방법활동 전개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 종합대책’ 발표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경찰이 성폭력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극단의 대책을 내놴다.

우선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방법 비상령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 또 경찰청 산하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단속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3일 오후 전국 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이 3일 오후 미금동 경찰청에서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강력범죄 총력대응 대응책을 논의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방법 비상령 선포...비상근무 돌입

경찰은 현시점이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내달 3일까지 한달동안 동원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 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한다.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뿐만 아니라 내근 근무자도 최대한 동원, 자체 방법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지역 등에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범죄분위기 제압을 위해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의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되, 불심검문시에는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사례 발생치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600여개의 서민치안강화구역, 95개의 성폭력특별관리구역 등 성폭력사건 발생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가로등 등 방법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아동·여성 실종사건은 사건초기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한다.

11) 『서울신문』, 「여성청소년계→과 승격...성범죄 전담 인력 보강」, 2012년 9월 19일자.

시민협조 통한 지역방범 역량 확대

경찰은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완벽히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협조 가능한 모든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 주민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지하철역·아파트 등 별도의 자체 방범시스템을 둔 곳과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문을 잠그지 않아 범죄 표적이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반상회 등을 이용, 문단속, 위급상황 대처요령, 방범시설 설치요령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인근에서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은 '문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도금지)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 신설... '아동포르노대책팀' 설치-운영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과(課) 또는 계(係)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조기 개편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초등생 성폭행·살인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사범 및 해외 유입경로 분석·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사이버수사대 및 누리캅스 등을 총동원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 및 성인 PC방 등 오프라인상 음란물 상영 단속을 지속한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의료진·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해 활용하고, 경찰조사 시 피해자 신상 등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성폭력 우범자 관리 강화...전담 인력 총원

경찰은 성폭력 우범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우범자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규정 마련 등 보완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이는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최근 성폭력 전력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범죄로 성폭력 우범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및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우범자 전담관리 인력 793명을 총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대책 발표에서 "범죄 예방활동면에서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절감한다"며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폭력 범죄와 강력범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2146

7. 경찰청의 『묻지마 범죄』 대책의 문제점¹²⁾

- 『묻지마 범죄』의 경우 그 원인과 양상이 다양하여 단기간에 즉각적인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대책을 찾기 어려운 바, 이에 경찰청이 발표한 대책과 같이 과거 정책을 상당부분 답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전과자 위주의 우범자 관리체계에서는, 과거의 범죄경력은 없지만 사회적 좌절 등을 경험하여 불특정한 타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행위를 표출하는 유형의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불심검문 확대 정책의 경우는 공안 통치의 부활 등 인권 침해 소지 등 많은 논란이 있었음

- 불심검문이 우발적이고 무차별적인 범죄를 전면적으로 예방하는 수단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12) 광대경, 「무동기범죄의 실태와 대책 토론문」, 『2012년도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치안정책연구소, 2012.

청장 “성폭력 전담팀 신설”… 일선 경찰 “또 전담팀 타령”

(김기용)

경찰 종합대책 실효성 논란

학교폭력 전담팀, 주폭 전담팀 -

“내가 무슨 팀인지도 헷갈려”

기존 성범죄 대책도 운영 잘 안 돼

경찰이 전국 주요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부서를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또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발령 비상령을 선포한다.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과거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급조해 내놓은 대책과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김기용 경찰청장은 각 지부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기존 여성 청소년 상담부서에 성범죄와 유류업소 단속 업무를 맡기면서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성폭력 업무를 따로 떼어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설 부서에서는 성폭력 전과자 관리를 일원화해 성범죄에만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에는 아동 포드노 전담 대책팀을 설치해 국내외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강력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한 달간 기동대와 내근 인력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방범 활동에 나선다. 경찰은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의심이 들거나 동태가 수상한 이들을 불심검문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청들은 올해 초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만들어진 ‘학교폭력전담팀’, 5

월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시로 만들어진 ‘주폭 전담팀’에 이어 성폭력 전담팀까지 만들어지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내가 무슨 전담팀에 속해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라며 “사건만 터지면 상부에서 생색 내기용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이 내놓았던 긴급 대책도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경찰은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여아 두 명을 납치해 토막 살해한 정성현(43)이 검거되자 부모가 휴대전화로 자녀들의 동행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 초등학교 교장은 “월 5000원 이상 사용료를 내야 하고 신청하는 데 번거로움을 느낀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현재 학생의 10%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해 징기를 손상시킨 조두순(60) 사건이 터지자 경찰관과 학부모가 등·하고 시간대 학교 주변에서 합동 근무하는 ‘어머니 경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마저 경찰 인력이 부족하고 공권력이 학교에 들어오기를 꺼리는 교사를 때문에 현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7) 사건이 터지자 경찰은 인근 성범죄 발생 현황을 지구대 단위로 세분화해 보여주는 성범죄 지도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어차피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해 실제 주민들이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한기(경찰행정학) 한세대학교 교수는 “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정보·경비 담당 인력을 빼내 민생 치안 현장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상·이현 기자

stephan@joongang.co.kr



김기용 경찰청장이 3일 오후 서울 미군동 경찰청에서 성폭력·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조두순·김수철 사건 이후처럼 실효성 논란 불거지는 경찰 대책		
사건	당시 대책	현재 상태
정성현 사건 (2007년)	전자택고 시스템 -아동 가맹점 전자태그를 붙여 휴대전화로 등·하고 파악	사용료 부담 있어 모든 학부모 신청하지 않아
조두순 사건 (2008년)	어머니 경찰대 확대 -경찰관과 학부모가 등·하고 시간대 학교 주변 합동 근무 장 찾아보기 힘들어	경찰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합동 근무 장 찾아보기 힘들어
김수철 사건 (2010년)	성범죄 지도 시스템 -범죄 지리정보 시스템에 '성범죄' 분류를 따로 떼어내	경찰 내부 전산망 통해 조회 가능하지만 원형 지역 주민에게 전달 어려워
고종석 사건 (2012년)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운영	기존의 주폭(主暴)·학교폭력 등 전담팀 많아 현장에서 실무용 계기

- 매번 인력 증원과 CCTV 설치, 전담팀 신설을 하는 것보다 기존 정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정책에 대한 평가 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 선진국에 비해 많은 경찰의 정보·경비 담당 인력을 빼내 민생 치안 현장에 우선 투입해야 함
- 경찰청의 대책에 추가하여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¹³⁾

13) 김상균, 「무동기범죄의 실태와 대책」, 『2012년도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치안정책연구소, 2012.

7.1 수사 기법의 문제 - 프로파일링 기법의 문제점

7.1.1 프로파일링 현황

- 최근들어 연쇄살인, 연쇄강간, 연쇄방화 등과 같은 무차별적이고 무동기적인 범죄로 인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특히 연쇄범죄의 수사에 있어 과학적 수사기법인 프로파일링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 경찰청에는 범죄추세에 맞춰 범죄심리과학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2005년 2006년, 2007년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하였으며, 본청에 중앙범죄행동분석팀을, 지방청에 광역범죄분석팀을 설치하여 연쇄·광역 범죄에 대응하고 있음
- 프로파일러 정원은 2010년 40명(현원 39명)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음
- 중앙범죄행동분석팀은 프로파일러 4명(경감 1, 경위1, 경장2), 광역범죄분석팀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프로파일러 현황

자료: 경찰청

소속	인원	부서	프로파일링 업무인원	타업무 병행	프로파일링 전종인원	타부서 배치	타부서업무
경찰청	4	범죄행동과학계	4	1	3	0	서무
서울청	11	행동과학팀	5	0	5	6	
		강동 천호지구대					
		과학수사계 과수팀					
		양천서 과수팀					
		동대문서 과수팀					
		전산실					
강서 여청계							
경기청	5	과학수사계	5	2	3	0	거짓말탐지, 법최면, 전산조회
강원청	1	과학수사계	1	1	0	0	몽타주, 법최면, 거짓말탐지
인천청	2	여청계(원스톱)	1	1	0	1	몽타주
		과학수사계					
대전청	2	작전전경계	1	1	0	1	거짓말탐지
		과학수사계					
충북청	2	과학수사계	2	2	0	0	법최면, 주민원지, 족적
충남청	1	과학수사계	1	1	0	0	법최면, 몽타주, 장비 관리, 수사자료표
광주청	1	과학수사계	1	1	0	0	영상분석
전북청	1	과학수사계	1	1	0	0	법최면, 거짓말탐지
전남청	1	과학수사계	1	1	0	0	법최면, 거짓말탐지, 영상분석, 수법, 피 통
대구청	2	과학수사계	2	1	1	0	영상분석
경북청	1	과학수사계	1	1	0	0	법최면, 몽타주, 주민 원지
부산청	2	과학수사계	2	0	2	0	-
경남청	1	과학수사계	1	0	1	0	-
울산청	1	과학수사계	1	1	0	0	서무, 수법
제주청	1	과학수사계	1	1	0	0	서무, 몽타주, 법최면
합계	39		31	16	15	8	

7.1.2 프로파일링 운영의 문제점

□ 사건발생 후 초기 수사시 물적, 탐문 수사 집중

- 최근 추세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나 연쇄 범죄의 경우 피해자 주변의 인적, 물적 탐문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해가는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 해결 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현장에서 범죄사건 준비, 현장훼손 등으로 인해 법과학적 단서의 발견이 어려울 수 있음

□ 프로파일러가 업무체계화 확립 안됨

- 현재 경찰청에 근무하는 프로파일러는 39명이지만, 8명은 타부서에 배치되고, 16명은 타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프로파일링 전종인원은 15명에 불과함
- 특히 팀으로 운영되는 본청, 서울, 경기를 제외한 14개 지방청에는 프로파일링 업무를 담당하는 1~2명의 프로파일러가 근무하고 있지만, 부산과 경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환경은 범행현장 수사에 참여하고 범죄흔적과 범죄자의 심리를 중심으로 범죄에 관해 자료를 분석, 측정하는 프로파일링 업무에 전념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할 것임

□ 프로파일러 수사 현장 경험 부족

- 프로파일러 경력자들은 프로파일링에서 수사현장에 대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지역망 체계의 프로파일링 분야 시스템 정비 필요

- 본청(4명), 서울청(5명), 경기청(5명)을 비롯해 각 지방청에 프로파일러를 배치하고 있으며, 본청에는 중앙범죄행동분석팀을, 지방청에는 광역범죄분석팀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본청과 서울청, 경기청 이외의 지방청에는 1~2명의 프로파일러들이 상주하며, 범죄가 발생할 경우 관련 광역권의 프로파일러들이 모두 모여 프로파일링에 참여하는 체제임

※ 예를 들어 부산에 범죄가 발생할 경우 본청 파견 프로파일러와 부산청 외에도 영남권에 소재한 지방청 소속의 프로파일러가 함께 하는 체제임

- 프로파일링은 범죄·범죄자·피해자·지리적 프로파일 등 4가지 전문 분야로 구분되며, 범죄의 원인과 형태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에는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함
 - 또한 범죄발생시 광역권으로 공동으로 업무를 하지만, 일반상황에서는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성을 특화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임

- 광역권으로 수사가 필요하지 않는 각각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 즉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1~2명이 상주하는 체계가 합리적일 수 있지만,
 - 범죄심리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범죄심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도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프로파일링 기법의 발전을 위한 발걸음은 더욱 더딜 수밖에 없을 것임¹⁴⁾

□ 연구팀 부족과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안됨

- 미국, 영국과 비교했을때 『묻지마 범죄』나 미제사건에 대한 범죄 유형 DB구축, 프로파일링 기법의 범죄데이터 공유와 활용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4) 김상균, 무동기범죄의 실태와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2012년도 학술 세미나

- 경찰청 범죄정보지원계에서는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인 SCA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 주변의 인적, 물적 탐문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해가는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범죄유형 DB구축과 활용은 『묻지마 범죄』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임
- 그러나 현재 범인이 검거된 후 면담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SCAS시스템을 통해 공유되고 있으며,
 - 이외에 프로파일링의 주업무라고 할 수 있는 범인이 검거되기 전 발생사건에 대한 분석내용과 범인 추적과정에서의 조사자료와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SCAS시스템에 DB화 되어 있지 않고, 프로파일러 각자가 보관하고 있어, 수량이나 정보의 내용조차도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파일러는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 범죄자의 유형을 예측하고, 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범죄를 발생사건이라고 지칭함
-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형 『묻지마 범죄』와 강력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연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파일링 기법과 범죄유형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범죄 심리전문가 교육 기관 부족

-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가장 근접해있는 것은 현장수사관임
- 범죄추세는 지능화되고, 『묻지마 범죄』가 확대되는 등 범죄는 복잡 다단해지고 있어, 과거의 수사방식이 일정부분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음

- 한국은 범죄심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나 범죄심리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부족하며, 경찰프로파일러들을 확대해 수사에 투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또한 프로파일링 특성상 다수의 인원을 한번에 교육시킬 수 없는 특성이 있어, 교육인원을 대폭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음

경찰 중 프로파일링 관련 교육 이수 현황

범죄분석전문과정 **자료: 경찰수사연수원(단위:)명)**

	년도	총인원	프로파일러	과학수사요원	형사	외부기관
1기	2005년	28	0	11	17	0
2기	2006년	31	12	8	7	4
3기	2007년	29	12	7	8	2
4기	2008년	27	9	3	13	2
5기	2009년	20	14	0	2	4
6기	2010년	19	7	8	0	4
7기	2011년	17	8	3	1	5
8기	2012년	21	8	6	4	3
총		192	70	46	52	24

- 경찰 중 프로파일링 관련 연간 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2005년 이후 많겠는 31명부터 적게는 17명으로 8년간 총 192명이 이수받았음.
연평균 24명 수준임
- 프로파일링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과학수사요원 과 형사 교육 이수자는 8년간 46명, 52명으로 연 평균 6, 7명 수준임

7.2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활용 부족

□ 전문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범죄가 지능화·흉포화·기동화 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진술 위주의 수사는 진술의 불확실성과 번복 등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사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베테랑 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수사관제를 도입함
 - 소정의 수사경력·실적이 있는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 평가시험 → 인증심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선발·인증을 부여함
 -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전문수사관 인증제도를 시행해, 2012년 현재까지 수사이론과 지능, 사이버, 과학수사 분야에서 인증서 1,165건이 발급됨

'05년 ~'08년 전문수사관 인증 현황

자료: 경찰청(단위: 건)

구분	계	지 능				강 력					사이버		과 학 수 사					
		금융 경제	공공 지능	보건 환경	총기	강력	조직 폭력	테러 인질	화재 수사	마약	사이 버	디지털 증거분석	현장 감식	화재 감식	법 최면	범죄 분석	거짓말 감정	CIMS
계	215	32	18	7	1	16	6	1	2	17	16	4	60	12	3	1	14	5
05년	92	15	7	4	-	10	2	1	2	6	8	2	12	6	2	-	12	3
06년	31	8	3	1	-	2	-	-	-	2	3	-	7	3	-	-	1	1
07년	33	5	2	1	-	2	2	-	-	4	1	1	13	-	-	-	1	1
08년	59	4	6	1	1	2	2	-	-	5	4	1	28	3	1	1	-	-

※ '09년에는 제도개선 T/F 운영으로 인증 미실시, 인증분야 변경, 전문교육과 연계 강화 및 인증분야 재설정 (죄종별 → 수사기법 중심 분류)

‘10년~’12년 전문수사관 인증 현황

자료: 경찰청(단위: 건)

구분	계	지능		강력			사이버		과학수사					
		신문 기법	회계 부정	추적 수사	마 약 류	성 폭 력	해킹 범죄	디지털 증거분석	현장 감식	혈흔 분석	화재 감식	최면 수사	범죄 분석	거짓말 탐지
계	950	113	64	275	71	67	14	27	187	25	56	28	13	29
10년	485	69	45	135	35	19	9	10	99	17	24	20	6	16
11년	96	11	8	29	9	6	1	3	27	-	1	1	-	-
12년	369	33	11	111	27	42	4	14	61	8	31	7	7	13

- 그러나 전문수사관의 숫자는 전체 수사인력(18,170명)의 6.2% 수준에 불과함
-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노력에 비해 인증 수령 후의 인센티브(자격 수당, 인사점수 반영)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수사경과제도 제도의 문제점

- 수사경과제는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경찰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수사역량을 높이고, 수사부서에 전종하기 위한 인사운영 방식임
 -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수사경과’를 신설하고, 수사경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체계를 운영(전보·승진·교육 등)하고 있음
 - 수사경과 적용부서는 <수사·형사과> → <여성청소년·외사수사·교통조사 기능>으로 확대하여 운영되고 있음
- 수사경과제의 지원율은 2005년 1.2:1 → 2.2:1로 상승할정도로, 안정적인 인사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부서 선호도가 증가함

수사경과 신청 및 선발 현황

자료: 경찰청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신 청	19,361	8,071	3,269	2,525	3,954	2,655	5,225	1,971
선 발	16,638	4,925	1,542	1,447	3,146	1,375	2,615	916
지원율	1.2 : 1	1.6 : 1	2.1 : 1	1.7 : 1	1.3 : 1	1.9 : 1	2.0 : 1	2.2 : 1

- 수사관의 수사경력은 5년 이상자가 2004년 41%에서 2011년도 59%로 대폭 향상되었을 정도로 수사경과제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수사관의 수사경력 대폭 향상

자료: 경찰청

구 분	총인원	수사경력 1년미만	1 ~ 3년	3 ~ 5년	5 ~ 10년	10년이상
'04년도	16,211 명	2,722 명 (17%)	3,421 명 (21%)	3,422 명 (21%)	4,121 명 (25%)	2,525 명 (16%)
'11년도	18,170 명	2,261 명 (12%)	2,777 명 (15%)	2,477 명 (14%)	5,254 명 (29%)	5,403 명 (30%)

- 각 경찰서별로 수사경과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경과 정원이 적은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은 상대적으로 수사경과를 받기가 어려움
- 수사부서 이외에 지역경찰과 같은 현장 출동 부서에 수사업무 실무 경험자가 부족해 초동수사의 역량이 저하되는 등 경찰 전반의 수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수사경과자는 수사부서 근무가 보장됨에 따라 자기계발에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한시적 대응팀의 한계

- 경찰청은 지난 9월 3일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 기동대 내근 등 모든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총력방범활동을 벌이고, 적극적 불심검문, 모든 경력 전기능이 참여하는 일제 검문검색과 현장간부 비상근무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
-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매번 반복되었던 것이고, 경력 한계상 지속될 수 없음
-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자 관리, 음란물 단속, 성폭력 우범자관리, 외국인 성폭력 범죄등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7.3 법적 미비점의 문제점

□ 보복 범죄 관련

- 가중 처벌되는 보복범죄 대상에 ‘개인적 복수심’이 포함되지 않음
- 범행대상은 특정인, 범행동기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영역 및 우발범죄로서 기존의 방식을 적용하면 되지만, 보복범죄가 문제가 될 것임
- 보복범죄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9에 보복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형벌을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그러나 그 가중 대상이 되는 보복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야만 되기 때문에, 여의도 칼부림 사건처럼 전 직장동료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복수심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상 가중인자로서 고려해야만 함

□ 테러, 증오, 연쇄적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 범행대상은 불특정인이지만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의 범죄는 테러, 증오범죄, 그리고 연쇄적 강력범죄가 있을 것임

○ 테러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로서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음

- 하지만 테러는 대외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지만 대내적으로는 국내에서 범해진 중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논의가 필요함

- 증오범죄는 기존의 범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범죄유형이 아님
 - 살인·상해·방화 등과 같은 기존의 범죄유형에 단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서 특정 종교·인종·피부색·성적 취향·계층 등으로 인하여 생성된 행위자의 증오 또는 혐오감이 추가된 범죄임
- 연쇄범죄의 경우에는 수개의 행위를 통하여 수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할 것임

□ 치료감호 처분

- 범행대상이 불특정인이고 범행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죄』 가해자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로 치료감호 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
- 하지만 이러한 묻지마 범죄자에 대하여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 감호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왜냐하면 성범죄자 이외에 다른 『묻지마 범죄』의 경우 각 호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8. 경찰청의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

8.1 수사 시 개선 방안 - 프로파일러

□ 사건발생 후 초기 수사시 참여확대 방안

- 초기 사건 현장에서부터 프로파일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범죄와 원인을 결부시킬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프로파일러 사건 초기 수사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 프로파일러 업무체계 확립

- 현재 경찰청에 근무하는 프로파일러는 39명이지만, 8명은 타부서에 배치되고, 16명은 타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프로파일링 전종인원은 15명에 불과함
- 특히 팀으로 운영되는 본청, 서울, 경기를 제외한 14개 지방청에는 프로파일링 업무를 담당하는 1~2명의 프로파일러가 근무하고 있지만, 부산과 경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타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환경은 범행현장 수사에 참여하고 범죠힌적과 범죌자의 심리를 중심으로 범죌에 관해 자료를 분석, 측정하는 프로파일링 업무에 전념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할 것임
- 프로파일러 전담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또한 범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도록 해야 함.
-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 수사·처리방식의 사례별·범죄양상별 매뉴얼화, 범죄유형별 데이터 자료 축적(DB화) 등 프로파일링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계 확립 필요함

□ 일정기간 수사분야 근무 의무화

- 프로파일러들이 수사 분야 근무 경력이 없으면 현장 적용이 용이하지 않음. 따라서 채용된 프로파일러에게 근무초기 일정기간동안 수사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함

□ 광역망 체계의 강화와 프로파일링 분야별 전문 프로파일러 육성 추진

- 프로파일러들이 각각의 전문분야별 의견을 통합하고, 공동연구·논의를 가능케한다는 측면에서 권역별 광역팀(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을 상시체제화 하는 것이 필요함(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15))
- 또한 이러한 상시체제는 프로파일링 분야별로 프로파일러들이 전문성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이러한 광역권 상시체계 구축과 분야별 전문화는 일부 경력있는 상위 프로파일러에 대한 의존성도 낮출 수 있을 것임

15)

국립수사연구원 본원 및 지방업무	
부서	담당지역
본원	서울, 경기지역
남부분원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서부분원	광주, 전남, 전북
중부분원	대전, 충남, 충북, 경기(안성,평택), 전북(무주) 경북(고령,구미,김천,문경,상주,성주,칠곡), 경남(거창, 산청, 함양)
동부분원	강원, 경기(이천,여주,양평,가평), 충북(충주,제천,단양,음성,진천), 경북(군위,의성,안동,영주,봉화,영양,청송,예천)

□ 연구팀 신설과, 연구자료 및 범죄유형의 DB구축과 자료 공유 필요

- 프로파일링 기법과 범죄유형의 연구를 위한 연구팀 신설이 필요함
- 또한 연구팀의 결과물을 비롯한 『묻지마 범죄』와 미제사건 관련 자료들의 DB화와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력확충을 추진해야함
 - ※ 1987년에는 법무부에서 살인사건수사추적시스템(Homicide Investigation Tracking System : HITS)을 구축하여 미국 전역의 모든 사법기관 간에 살인, 성폭행, 미아사건 등 강력사건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심리의 교육 활동 추진

- 범죄심리 전문가인 경찰 프로파일러들이 범죄분석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수사경과자나 전문수사관을 비롯한 현장수사관에게 교육을 실행한다면 효과적일 것임
 - ※ 단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장인력과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광역팀으로 상시체계화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과 병행함으로써 프로파일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할 것임
-
- ※ 정부는 지난 8.27일 민생치안확보 대책발표에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묻지마 범 죄수사에 대한 외국의 선진기법을 소개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등 전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 그러나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하며, 경찰 프로파일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인력 확충을 통해 상시적인 전문교육을 확대,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병행하여야 함
-

8.2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 전문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

- 변화하는 범죄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격수당과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비롯한 다양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경찰청은 '전문수사관제도'의 국가자격증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수사경과제도의 인사운영 방식 변경

- 각 지방청 별로 수사경과 정원을 배정, 선발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수사경과 인원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경찰·112 지령센터 등에도 수사실무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함

- 수사경과자가 비수사부서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제도 개편해야 함. 수사경과 자격에 대한 일정기간(예: 5년)마다 갱신 절차를 도입, 전문교육 이수 또는 시험 합격시에만 수사경과 신분을 유지하도록 개편이 필요

□ 『묻지마 범죄』 전담부서 설치 필요

- 사건 발생시 마다 한시적 전담팀이 아니라 『묻지마 범죄』 전담반 설치 및 『묻지마 범죄』 자료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전담반은 수사요원과 범죄심리분석 요원, 각 정부기관 연계를 담당하는 요원, 범죄관련 연구자료 및 범죄정보DB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체계로 편성

- 이러한 전담반은 범죄심리분석 또는 범죄분석을 위한 기반확충이 선행되고 관련 기능 통합 관리될 때 실효성이 있을 것임
- 따라서 경찰 프로파일러의 인력확충과 연구팀 구성,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야 함
- 더 나아가 범죄심리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나 프로파일링 기법을 연구하는 전문기관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함
- 『묻지마 범죄』 자료 수집과 입력·통계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추진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확한 개념 정의와 수사·처리방식의 사례별·범죄양상별 매뉴얼을 구성해야 함

8.3 입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앞에서 현재 『묻지마 범죄』로 통칭되는 사건들에 대해 범행동기와 범행목적에 따라 4가지 범죄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보복범죄 관련 입법적 개선사항

- 가중 처벌되는 보복범죄 대상에 ‘개인적 복수심’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가법」 제 5조의9의 가중처벌 보복범죄 대상에 개인적 복수심으로 인한 범죄를 양형상 가중인자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 테러, 증오, 연쇄적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 증오범죄에 대해서는 기술한 보복범죄와 같이 「특가법상」 형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식의 입법적 대응방안을 고려해야함

- 연쇄 범죄의 경우 「형법」 38제조제1항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그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함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처벌에서 치료 중심의 대응 필요: 치료감호 처분

-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로 치료감호 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치료감호법의 적용 대상자에 『묻지마 범죄』의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사후조치는 물론 예방차원에서도 치료대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치료감호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함

- I)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 II)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 III)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9. 범죄 예방과 묻지마 범죄

-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특성 그리고 해외 사례, 수사의 문제점과 범의 미비점 등을 살펴보았음
-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옳음
- 우선,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학교 폭력 문제, 가정 폭력 문제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한 검토와 사회적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며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학교 폭력에 대해 경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후, 검거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방임. CCTV가 아니라 감시인 체계의 순찰 강화와 범죄 예방과 협력 치안의 주체인 경찰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내 공공기관, 지역 주민등이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묻지마 범죄는 사건의 동기를 분석하고 사회적 문제과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이 경찰이나 관련기관에서는 무동기 범죄에 대한 관련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관리도 되지 않고 연구 내용도 거의 없었음
-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관련 통계가 가장 기본이 되나 무동기 범죄자들의 개인적 프로파일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대책은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음

- 무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무동기 범죄자들의 개인적 프로파일링 구축과 아울러 무동기 범죄 사건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집계하여 그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통계자료의 구축은 무동기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함께 무동기 범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유용할 것임
-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사 기법을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함.
「묻지마 범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범죄이며, 국민들을 더욱 더 불안하게 하는 범죄로 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대책 마련에 경찰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 봄

<참고자료>

[참고 1] 프로파일링이란?

□ 프로파일링이란 범행현장에 나타난 범죄흔적을 중심으로 범죄자의 심리상태와 범죄자의 특징, 범죄수법, 범행장소의 지리적 특성 등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모습과 특성을 추론해가는 수사기법으로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①범죄 프로파일(crime profile)은 어떤 범죄에 관하여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그 범죄의 다양한 특징을 알기 쉽게 묘사하는 것을 말하고,

②범죄자 프로파일(criminal profile)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인물의 구체적인 모습과 심리를 유추하도록 도우는 기법을 말하며,

※연쇄범죄자의 전형적인 유형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자(psychopath)로, 긴장과 스틸 추구, 병적인 거짓말, 죄의식양심 결여,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성격을 들 수 있음

③피해자 프로파일(victim profile)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설명하는데 있으며,

※여성과 노인 등 방어능력이 약하거나, 치안이 열악한 서민거주지역, 피해자를 보호할 감독자나 보호자가 없는 어린아이와 심신미약자,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 성매매 종사여성, 동성애자,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같은 경우 범인의 공격가능성이 높음

④지리적 프로파일(geographic profile)은 다양한 범행장소의 공간적 분포형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규칙을 찾아내 범인의 집이나 직장과 같이 범인이 가장 있을 법한 장소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기법으로,

- 주로 연쇄범죄(연쇄살인, 연쇄강간, 연쇄방화 등)의 경우와 같이 여러 장소에 걸쳐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유용함

[참고 2] 묻지마 범죄 사례

- 범인들에게는 살인 그 자체가 목적으로, 피해자는 단지 범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 원한관계나 치정관계, 경제적 이익, 성범죄의 목적 등 객관적인 살인의 동기를 범죄현장에서 밝혀내기가 쉽지 않음

1. 연쇄 살인

▶ 한국 사례

□ 정두영(1968년 12월 생)사건

- 정두영은 1968년 부산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2세 때 아버지가 숨지고 어머니가 재혼하자 삼촌집에 맡겨졌으며,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냄
- 정두영은 1988년 18세 때 불심검문 중인 방범대원 김모씨를 살해해 11년을 복역한 이후,
 -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16번의 강도를 범하고, 그 과정에서 9명 살해, 9명 중상을 입혔음
- 정두영은 늘 자신의 왜소한 외모 탓에 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둔기를 이용해서 살해했다는 점이 특징임

□ 유영철(1970.4월생) 사건

- 유영철은 전북 고창에서 막노동으로 어렵게 살던 부모 밑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초중고 시절은 서울에서 지냄

- 유영철이 14세에 부친이 사고로 사망한 후 홀어머니 밑에서 형제들과 살아오다가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였으나 좌절되고,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지만 학교부적응으로 자퇴하였음
- 유영철은 평소 편협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격분 하는 성격의 소유자로서, 이혼 후에는 말을 하지 않고 대인기피현상을 보였음
- 2003년 9월 11일 출소한 유영철은 9월 14일 서울 강남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이후, 서울 강남구, 종로구 일대에서 사람을 살해하는 등 2004년 7월 18일 체포될 때까지 20명을 살해하였음
- 유영철 사건의 범죄특성은 주로 부자인 노인 및 여성을 대상으로 둔기를 사용하여 살해했다는 점임

□ 해외 사례

▶ 미국

□ 테드 번디(Ted Bundy : 1946년 11월 24일 생)

- 1974년부터 4년간 약 35명의 사람을 살해하였으며, “연쇄살인범”이라는 말의 기원이 된 사람
- 다리에 김스를 하고 젊은 여성들의 동정심을 산 후 그의 폴스바겐에 그녀들을 유인하여 강간하고 살해함

□ 리처드 라미레즈(Richard Ramirez : 1960년 2월 29일 생)

- 80년대 중반 LA에서는 강간과 절도, 13번의 살인, 남편을 죽인 후 아내를 강간, 시신의 눈을 파내고 사지를 절단한 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 범인을 신문은 'midnight stalker'라 부름
- 재판 도중 사건현장을 담은 사진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리고 '악마 만세!(heil satan!)'등 악마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음

□ 폴 존 놀스(Paul John Knowles: 1946년 4월 17일 생)

- 어렸을 때부터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폴 존 놀스는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 집에서 의도치 않게 집주인이 죽게 되자 그 뒤부터 어린아이와 어른할 것 없이 무차별적인 살인행각을 벌임
- 20명을 죽인 그는 도주 중 경찰에 붙잡혔고, 호송되던 중 경찰의 총을 빼앗고 도주를 시도하다 가슴에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사망함

▶ 영국

□ 잭 더 리퍼 (Jack the Ripper)

- 1888년 8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2개월에 걸쳐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에 위치한 화이트채플 가에서 최소 5명의 매춘부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연쇄살인범을 말함
- 당시에는 과학수사가 매우 뒤떨어진 시대였고 지문확보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거하지 못함

▶ 일본

□ **코다이라 연쇄살인사건(小平事件: 1905년 1월 28일 생)**

- 1945년부터 1946년까지 발생한 일본의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임
- 어린 시절에 말을 더듬었고 그로 인하여 힘든 학교생활을 했다고 함 특히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분교에 입학하였지만 성적도 좋지 못했다고 함
 - 그는 약한 사람에게는 매우 난폭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여성에게는 매우 친절하게 대했다고 함
- 그는 총 10건의 살인죄로 기소되었지만, 3건은 그가 부인하였고 증거 또한 불충분하여 무죄로 판결났으며, 따라서 7건의 살인죄로 1948년 11월 16일에 사형이 확정되었고, 1949년 10월 5일 사형이 집행되었음

□ **나가야마 노리오(永山則夫: 1949년 6월 27일 생)**

- 1968년부터 1969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총기살인을 일으킨 범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997년 사형이 집행됨

2. [연쇄]방화

- 방화는 범행도구나 범행을 시도하기보다 여타의 범죄보다 용이한 반면,
 - 범죄의 동기를 밝혀내거나 범인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는 범죄임

□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

- 김대한 (당시 56세)은 2001년 4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 상하반신 장애가 오게 되어, 같은 해 11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임

-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있던 김대환은 지하철이 중앙로역으로 진입하자 페트병 2개에 나눠 담은 휘발유 2리터에 불을 붙였으며 이로 인하여 전동차 12량이 모두 불에 탔으며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한 사건임
- 김대환의 방화이유는 심한 우울증 후 정신질환이 심해진데 따른 판단력 상실로 알려짐

3. [연쇄]상해

- 2005년 1월 부산 해운대의 한 주점 화장실 앞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30대 남성 피해자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20대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세차례 찌른 후 달아남
- 2006년 1월 한달 동안 서울의 대림, 구로디지털단지, 숙명여대역, 신풍역, 구로공단역 등에서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가 이른 아침 출근시간에 젊은 여성들만을 골라 갑자기 칼로 허벅지를 찌른 뒤 달아나는 사건이 5건이나 연속적으로 발생함

4. [연쇄]성범죄

- 1996년 20대 범인 2명이 출퇴근을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들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하는 등 직장여성과 가정주부 36명을 상대로 강간함
- 1999년 말부터 2000년 6월까지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여고생과 여대생 85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대학생을 검거함
- 1999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대전 등지에서 74차례에 걸쳐 82명을 성폭행하고 2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체포된 일명 '대전 발발이사건'의 범인 이모씨는 청소년기에 가출하는 등의 성장과정을

제의 하고는 문구점과 택시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둔 평범한 보통 생활을 해옴

5. (연쇄)손괴

- 손괴형 범죄는 '술김에', '부부싸움 후', '잘 사는 사람들이 미워서' 등 다양한 화풀이 형태로 나타나며,
 - 주로 야간에 외제차량이 나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등의 타이어를 칼로 찍거나 유리창을 파괴하거나 사이드미러를 연쇄적으로 파손시키는 형태로 나타남

- 2005년 11월 서울 음암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 주차돼 있던 차량 20여대가 커다란 돌맹이로 심하게 파괴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범인으로 검거된 28세의 정모씨는 범행동기로 지갑을 잃어버려 기분이 나빠서 횡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함

- 2012년 4월 1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역삼동·신사동 일대 7km를 돌면서 상점 13곳과 차량 3대 등에 지름 5mm 쇠구슬을 쏘 유리창을 깨뜨림

□ 무동기 살인 유형별 사례 모음¹⁶⁾ (2008년)

무동기 살인사건

사건 1

발생장소와 일시: 강원 양구 4월 26일 20시 30분

피의자: 남 35세

피해자: 여 17세

사건경위: 강원 양구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던 여고생을 살해

동기: 아무나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

사건 2

발생장소와 일시: 강원 동해 7월 22일 13시 00분

피의자: 남 36세

피해자: 여 37세

사건경위: 동해시청 민원실에서 근무중인 여공무원을 칼로 찔러 살해

동기: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사건 3

발생장소와 일시: 서울 서대문 8월 15일 14시 59분

피의자: 남 25세

피해자: 남 41세

사건경위: 마트에서 칼을 구입한 후 배회하던 중 행인을 찔러 살해

동기: 누구든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

사건 4

발생장소와 일시: 경북 구미 9월 15일 5시 00분

피의자: 남 26세

피해자: 여 56세

사건경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보고 집에 가서 칼을 가져와 찔러 살해

동기: 평소 못생겼다는 주위 시선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건 5

발생장소와 일시: 서울 강남 10월 20일 10시 10분

피의자: 남 30세

피해자: 총 13명(사망 6, 중경상 7명)

사건경위: 고시원에 방화 후 복도로 나온 피해자를 칼로 찌름(대량살인)

동기: 생활고로 인한 사회불만

16) 무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이성식 연구위원, 경찰청 제출자료

무동기 상해사건

사건 1

발생장소와 일시: 경기 양주 1월 6일 20시 50분

피의자: 남 28세

피해자: 남 22세

사건경위: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갑자기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함

동기: 아무런 이유없음

사건 2

발생장소와 일시: 광주 광산 2월 15일 8시00분

피의자: 남 32세

피해자: 여 20세

사건경위: 노상에 앞에 떨어진 과도를 들어 행인의 목과 팔꿈치를 찔러 상해

동기: 생활고와 가출한 아내에 대한 불안

사건 3

발생장소와 일시: 인천 중부 3월 12일 22시 40분

피의자: 남 21세

피해자: 남 21세 등 6명(연쇄상해)

사건경위: 전철역부근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여성을 칼을 이용해 상해

동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해하려고

사건 4

발생장소와 일시: 강원 춘천 4월 28일 4시 20분

피의자: 남 41세

피해자: 남 27세

사건경위: 병원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

동기: 친형이 폐암말기 진단을 받아 기분이 나빠서

사건 5

발생장소와 일시: 전남 순천 10월 24일 0시 25분

피의자: 남 47세

피해자: 여 19세

사건경위: 귀가하던 피해자를 마트앞에서 차량에 있던 망치로 머리를 가격

동기: 해고 후 무작정 돌아다니다 아무에게 화풀이

무동기 방화사건

사건 1

발생장소와 일시: 서울 남대문 2월 10일 19시40분

피의자: 남 69세

피해자: 없음

사건경위: 국보 1호인 송례문 누각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소

동기: 97년 토지보상에 대한 불안

사건 2

발생장소와 일시: 인천 남동 4월 11일 5시 10분

피의자: 남 49세

피해자: 남 50세 등 4명(연쇄방화)

사건경위: 사건지 주변 빌라,공장 등에 종이에 불을 붙여 15회 연쇄방화

동기: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할 위기에 처지를 비관

사건 3

발생장소와 일시: 전남 광양 6월 13일 23시 5분

피의자: 남 39세

피해자: 남 35세 등 4명

사건경위: 사건지 일대 4Km내 축사, 차고등 8개소에 방화(연쇄방화)

동기: 노숙자 재활시설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 세상이 원망스러움

사건 4

발생장소와 일시: 충북 청주 8월 26일 23시 40분

피의자: 남 18세

피해자: 2명(남 42세, 여 58세)

사건경위: 술에 만취하여 이웃집에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연쇄방화)

동기: 평소 가정불화로 고민하던 차에

사건 5

발생장소와 일시: 인천 남부 12월 16일 4시 45분

피의자: 남 30세

피해자: 2명(남 20세, 남 28세)

사건경위: 은행 주차된 승용차에 방화(연쇄방화)

동기: 외제차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라이터로 방화

사건 6

발생장소와 일시: 서울 동대문 12월 30일 10시 00분

피의자: 남 26세

피해자: 남 41세

사건경위: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상가에 방화

동기: 생활고로 사회불만